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성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382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석유화학산업 관련 과세특례 신설(박성민의원안)	3

I. 개요

1. 박성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382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성민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8. 26.

(3) 회 부 일 : 2025. 8. 2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유화학산업은 생산, 수출, 투자 및 고용 창출에 중추적인 산업으로서 국민경제 및 산업생태계,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수익성 저하와 경쟁력 약화라는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한 상황임.

이에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을 통하여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바, 해당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관련한 세제지원 제도도 함께 개정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석유화학산업의 재편을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최대 30%를 공제율로 하는 투자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석유화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합병을 통해 중복자산을 양도하거나 석유화학사업자가 노후

자산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제공하는 세제지원
원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04조의36 및 제104조의37 신설 등).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석유화학산업 관련 과세특례 신설(박성민의원안)

현행	개정안																													
○ <신설>	○ 석유화학산업시설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안 제24조) ○ 공제대상: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액 ○ 유형별 공제율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기본</th><th rowspan="2">추가*</th></tr><tr><th>대</th><th>중견</th><th>중소</th></tr><tr><td>일반</td><td>1</td><td>5, 7.5¹⁾</td><td>10</td><td rowspan="5">10</td></tr><tr><td>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td><td>3</td><td>6, 9²⁾</td><td>12</td></tr><tr><td>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td><td>15</td><td>15, 20³⁾</td><td>25</td></tr><tr><td>반도체 분야</td><td>20</td><td>20, 25⁴⁾</td><td>30</td></tr><tr><td>석유화학산업시설**</td><td>20</td><td>20, 25⁴⁾</td><td>30</td></tr></table>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2조제3호에 따른 석유화학사업자가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재편을 위한 시설 1) (~3년)7.5%, (4년~)5% 2) (~3년)9%, (4년~)6% 3) (~3년)20%, (4년~)25% 4) (~3년)25%, (4년~)20% ○ 적용기한: 2029. 12. 31.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석유화학산업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	구분(%)	기본			추가*	대	중견	중소	일반	1	5, 7.5 ¹⁾	10	10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3	6, 9 ²⁾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15	15, 20 ³⁾	25	반도체 분야	20	20, 25 ⁴⁾	30	석유화학산업시설**	20	20, 25 ⁴⁾	30
구분(%)	기본			추가*																										
	대	중견	중소																											
일반	1	5, 7.5 ¹⁾	10	10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3	6, 9 ²⁾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15	15, 20 ³⁾	25																											
반도체 분야	20	20, 25 ⁴⁾	30																											
석유화학산업시설**	20	20, 25 ⁴⁾	30																											
○ <신설>	□ 석유화학산업의 합병에 따른 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안 제104조의36 신설) ○ 대상: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석유화학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																													

현 행	개정안
○ <신 설>	인 간 합병 ○ 내용: 중복자산 양도차익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적용기한: 2028. 12. 31.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자산부터 적용 □ 석유화학사업의 노후자산등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안 제104조의37 신설) ○ 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구연한(耐久年限)을 초과한 노후자산, 생산능력이 수요를 초과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자산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효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산 등 사업용고정자산 양도차익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적용기한: 2028. 12. 31.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자산부터 적용

* 박성민의원안 2025. 8. 26. 발의(의안번호 12382)

□ 개정안은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석유화학산업시설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특례 신설, 노후자산 양도차익 과세특례 신설 등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 먼저 현행법상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2조제3호에 따른 석유화학사업자가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재편을 위한 시설(이하 “석유화학산업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이는 일반적인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로 분류되어 투자금액에 대하여 1%~10%의 기본공제율이 적용되는데, 안 제24조

는 이에 대하여 반도체 분야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과 동일하게 20%~30%의 최고 기본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¹⁾

[통합투자세액공제 유형별 공제율]

(단위: %)

구 분	기본공제			추가공제 ^{주)}
	대	중견	중소	
일 반 (현행)	1	5, 7.5 ¹⁾	10	10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3	6, 9 ²⁾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15	15, 20 ³⁾	25	
반도체 분야	20	20, 25 ⁴⁾	30	
석유화학산업시설 (개정안)	20	20, 25 ⁴⁾	30	

주) 추가분=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1) (~3년)7.5%, (4년~)5%

2) (~3년)9%, (4년~)6%

3) (~3년)20%, (4년~)15%

4) (~3년)25%, (4년~)20%

다음으로 안 제104조의36은 석유화학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간에 합병 또는 분할합병을 함으로써 중복자산이 발생한 경우 1년 이내에 그 중복자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을 허용하려는 것이고,

안 제104조의37은 석유화학사업자가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구

1)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유화학산업”이란 석유·천연가스 또는 바이오매스 등을 원료로 기초유분을 생산하거나 이를 주원료로 합성수지·합성원료·합성고무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석유화학사업자”란 석유화학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업재편”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재편을 말한다.

연한을 초과한 노후자산, ②생산능력이 수요를 초과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자산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산,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효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산 등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을 허용하려는 것임.

□ 최근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중국과 중동 등 세계적인 설비 증설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인하여 구조적인 불황에 직면하였고, 이에 여수시와 서산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²⁾으로 지정되었음.

한편,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을 통하여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 계류 중임.³⁾

개정안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세제지원 제도를 함께 개정하려는 취지로,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란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3)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박성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2381」

첫째, 석유화학산업시설 투자비용에 대해 반도체 분야와 같이 최고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은 통합투자세액공제(법 제24조)를 도입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존에 존재하던 중소기업등 투자세액공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⁴⁾, 의약품 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등을 하나의 제도로 통합하여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 동일하게 공제를 적용하기 위해 2020년 세법개정을 통해 신설되었음.

다만,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기술에 한하여 일반적인 투자 대비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석유화학산업 관련 첨단기술을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여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해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현행 세제지원 체계에 부합할 것으로 보임.

기획재정부는 사업재편 관련 투자에 국가전략기술 이상의 세제 지원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둘째, 현행법 하에서도 내국법인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⁵⁾을 수립하여 승인받을 경우 합병에 따

4) 연구시험용 및 직업 훈련용 시설,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안전시설, 생산성향상시설 등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음.

5)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사업재편계획의 승인신청) ②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고

른 중복자산 양도⁶⁾ 및 금융채무 상환과 투자를 위한 자산 매각⁷⁾에 따른 양도차익 일부에 대하여 4년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년간 분할 익금산입을 허용하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참고로 정부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기업에 대해서는 채무

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재편의 필요성
2. 사업재편을 통하여 사업재편계획기간 중 달성하고자 하는 생산성, 매출액 및 재무건전성 향상 등의 목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만, 제2조제5호다목에서 규정하는 탄소중립활동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 11. (생략)

제10조(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 ④ 주무부처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기업이 제9조제2항제2호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1. 신청기업의 기술역량, 자금 등 경영자원을 고려할 때 제9조제2항제2호의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2. 해당 사업재편계획에 의한 생산성, 매출액 및 재무건전성 향상 등이 신청기업이 속한 시장구조 등을 감안할 때 지속가능한지 여부
3. 해당 업종의 과잉공급 또는 공급망 위협 완화·해소, 신산업 진출,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의 위기 극복에 기여하는지 여부

6)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1(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내국법인 간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하며, 같은 업종 간의 합병으로 한정한다)함에 따라 중복자산이 발생한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중복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중복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그 중복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 및 분할평가차익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7)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6(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
2.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한다는 내용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 양도시 양도차익 과세이연기간을 현행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에서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2653)」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154